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경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4.04.12.

발의의원 : 조경구, 권기훈,
김원규, 김재용,
김정옥, 김지만,
김태우, 류종우,
박우근, 박종필,
윤권근, 이성오,
이재숙, 이재화,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정일균,
하중환, 황순자
의원(20명)

1. 개정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정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및 개발행위허가 심의 제외 대상 확대 등을 통하여 농어업인 소득창출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정비(안 제17조의4)

나.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안 제19조의2)

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 건축제한 완화(안 제49조)

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건폐율 완화(안 제79조)

마. 방재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안 제80조)

바. 개발행위허가제한 등 권한위임 사무 정비(안 별표 3)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 제3항”을 “시장은 법 제37조제3항”으로,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에 대한”을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를”로, “변경을 할”을 “변경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17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횡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제한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2회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을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5”를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제1호 다목”을 “제1호라목”으로 한다.

제49조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산녹지지역”을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 녹지지역”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120퍼센트”를 “140퍼센트”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권한위임 사무

(제102조제1항 관련)

현행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p>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다음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입안의 제안서 처리,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다만, 시장이 입안하는 사항은 제외한다)</p> <p>(1)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p> <p>(가) 용도지역·용도지구(입안 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주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와 동일하게 변경하거나 종전의 용도지역·용도지구로 환원하는 경우 및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된 집단취락·경계선 관통취락·단절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에 한한다)</p> <p>(나) 집단취락지구</p> <p>(다) 방재지구</p> <p>(다) 방재지구</p> <p>(라) 삭제<2011.10.10 조례 제4285호></p> <p>(마) 삭제<2011.10.10 조례 제4285호></p> <p>(바) 삭제<2011.10.10 조례 제4285호></p> <p>(사)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경계선 관통취락,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p> <p>(2) 도시기반시설</p> <p>(가) 도로(다만,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한한다)</p> <p>(나) 주차장</p> <p>(다) 궤도</p> <p>(라) 삭제<2011.10.10 조례 제4285호></p> <p>(마) 삭제<2020.10.5.></p> <p>(바) 광장(다만, 교통광장은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광장에 한한다)</p> <p>(사) 공원(다만, 생활권 공원중 근린공원, 주제공원 중 묘지공원, 체육공원은 제외한다)</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p>
(아) 녹지	

- (자) 공공공지
- (차) 수도공급설비(다만, 배수시설에 한한다)
- (카) 열공급설비
- (타) 시장(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은 제외한다)
- (파) 학교(다만, 고등학교 및 대학교는 제외한다)
- (하) 공공청사(다만, 시 관련청사는 제외한다)
- (거) 문화시설
- (너) 체육시설(다만, 골프장은 제외한다)
- <삭제>
- (러) 연구시설
- (머) 사회복지시설
- (버) 공공직업훈련시설
- (서) 청소년수련시설
- (어) 하천(다만, 소하천에 한한다)
- (저) 저수지(다만, 농업용수 및 홍수조절을 위한 저수지에 한한다)
- (쳐) 방화설비
- (커) 방풍설비
- (터) 방수설비
- (피) 사방설비
- (허) 장사시설(다만, 화장시설 및 공동묘지는 제외한다)
- (고) 삭제<2020.10.5.>
- (노) 삭제<2020.10.5.>
- (도) 종합의료시설
- (로) 하수도(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
- (모)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다만,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 (보) 수질오염방지시설
- (소) 폐차장

(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나. 입안권한이 위임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지형도면 작성, 결정의 실효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에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p>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p> <p>(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p> <p>(나) 신설 또는 변경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5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의 경미한 변경사항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은 제외한다.</p>	<p>법 제34조</p>
<p>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다만,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p> <p>(1)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p> <p>(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및 시행자 지정</p> <p>(3)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p> <p>(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p> <p>(5) 서류의 열람 등</p> <p>(6) 실시계획의 고시</p> <p>(7)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p> <p>(8) 공사 완료공고</p>	<p>법 제85조</p> <p>법 제86조</p> <p>법 제88조</p> <p>법 제89조</p> <p>법 제90조</p> <p>법 제91조</p> <p>법 제92조</p> <p>법 제98조</p>
<p>라.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다만, 결정권한이 위임된 시설에 한한다)</p> <p>마.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다만, 결정권한이 위임된 시설에 한한다)</p>	<p>법 제43조 및 조례 제13조</p> <p>법 제47조 및 조례 제14조·제15조</p>
<p>바.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다만, 결정권한이 위임된 시설에 한한다)</p> <p>사. 토지에의 출입</p> <p>아.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과 손실보상(다만,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권한이 위임된 시설에 한한다)</p> <p>자. 청문(다만,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권한이 위임된 시설에 한한다)</p>	<p>법 제48조</p> <p>법 제130조</p> <p>법 제133조</p> <p>법 제136조</p>

<p>차.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된 보고 및 검사</p>	<p>법 제137조</p>
<p>2.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다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사무 중에서 시의 각종 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법 제56조·제62조 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 및 조례 제19조부터 제30조까지</p>
<p>가. 개발행위의 허가</p>	
<p>나. 준공검사</p>	
<p>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p>	
<p>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 행위</p>	
<p>마. 개발밀도관리구역</p>	
<p>바.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사항</p>	
<p>사.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p>	
<p><신설 2023.12.29.></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의2(용도지구의 지정) <u>별</u> 제37조 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으로 <u>다음 각호의</u> <u>용도지구에 대한 지정 또는 변</u> <u>경을 할 수 있다.</u></p> <p>1. <u>문화지구: 「지역문화진흥</u> <u>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시설</u> <u>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u> <u>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u> <u>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u> <u>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u></p> <p>제17조의4(지구단위계획이 적용 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생략)</p> <p><u><신 설></u></p>	<p>제12조의2(용도지구의 지정) <u>시장</u> <u>은 법 제37조제3항-----</u> <u>----- 「지역문화진</u> <u>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u> <u>를 ----- 변경</u> <u>할 -----.</u></p> <p><u><삭 제></u></p> <p>제17조의4(지구단위계획이 적용 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 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 는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u> <u>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u> <u>건축물 : 제한없음</u></p> <p>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 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u>건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u> <u>비슷한 가설건축물 : 2회</u></p>

제19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

1. ~ 9. (생략)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생략)

제36조(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영 별표 7 제1호 다목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50미터로 한다.

② (생략)

제49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19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1. ~ 9. (현행과 같음)
10. ----- 10
(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11. (현행과 같음)

제36조(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
제1호라목-----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1. 삭 제

2.·3. (생 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영 별표 20 제1호자목(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생 략)

5. (생 략)

제73조의2(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
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80조 및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문화지구

제79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2.·3. (현행과 같음)

4.-----

<삭 제>

<삭 제>

다.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
서의 건축제한) -----
-----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

-----.

<삭 제>

제79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생략)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
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
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
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 3. (생략)

제8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
률)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
조제5항에 따라 주거지역·상
업지역·공업지역의 건축물로
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 ⑨ (생략)

(현행과 같음)

② ----- 생산
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

1. ~ 3. (현행과 같음)

제8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
률) ① (현행과 같음)

② -----

----- 140퍼센트
-----.

③ ~ ⑨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횡수별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횡수만큼

나.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

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1. (생략)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나. (생략)

다.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1) ~ 9) (생략)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생략)

라. ~ 바. (생략)

2.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

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해제에 관한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제65조(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이하 “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제4조의2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2.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3.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

1. 기반시설의 배치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정할 것
 2. 기반시설의 설치시기는 재원조달계획, 시설별 우선순위, 사용자의 편의와 예상되는 개발행위의 완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⑦ (생략)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해당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해당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⑨ (생략)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④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⑥ ~ ⑫ (생략)

제1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 삭제

3.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중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삭제

② 삭제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자목의 일반음식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더목의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은 제외한다.

(1)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

설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 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

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1호자목 및 차목(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④ (생략)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략)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 16. (생략)

⑥ ~ ⑩ (생략)